Ⅱ 사적연금시장의 구분

○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기업형 IRP)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시장의 특성이 다르기에 각 시장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금상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직장 근로자만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그리고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이 전자에 속하고 퇴직연금(DC형, DB형, 기업형 IRP)이 후자에 속함
- 한편,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적립기간 중에 세제혜택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할 수 있지만, 후자는 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음

〈표 Ⅱ-1〉 사적연금시장의 구분

구분	개인형(개인)	기업형(근로자)
금융업종 간 경쟁 영역	세제적격 연금시장(연금저축, 개인형 IRP)	퇴직연금시장(DB형, DC형, 기업형 IRP)
보험회사 간 경쟁 영역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일반연금, 변액연금)	-

1. 세제적격 연금시장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하며, 세제혜택 니즈가 높은 개인이 가입하고 있음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은 최대 700만 원이며, 개인은 IRP 납입액만으로 또는 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한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에는 IRP 추가 납입으로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구성할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최대 700만 원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연금상품은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형 IRP에서는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연금저축에서는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특성상 자발적인 경로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신규가입 비중이 높을 수 있음

○ 그러나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시장은 개인의 노후소득 재원을 적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65세 이후 고령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통상 10년의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금 개시를 전후한 시기의 소득 보장에 한정되고 있음

○ 한편,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할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를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노후자산 적립 시 상품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적립기간의 수익률일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환급받는 세제적격 상품이 세제비적격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하고 있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개인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고자 가입하는 연금상품임

-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납입금에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적립 측면에서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변액연금은 이러한 단점을 펀드투자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자산 적립이 펀드투자와 유사하므로 일반 펀드를 활용한 노후자산 마련과 차별화가 어려움
- 다만,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임

○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타 업권에서 제공하지 않는 종신연금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통해 적립된 자산을 종신연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연금 본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

-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쟁력은 적립된 자산을 은퇴 이후에 유동화하는 수단(정기연금, 상속연금, 종신연금)이 다양하고 종신토록 소득흐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따라서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적립한 노후자산을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의 '일시납 종신연금'으로 흡수하는 역할이 중요함

3. 퇴직연금시장

○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고용주가 부담하느냐 근로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기업형 IRP가 있음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고용주(기업)에 귀속됨
-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함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업형 IRP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운용은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함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큰 DB형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DC형 시장의 점유율은 은행이 보험을 비롯한 다른 금융업종을 앞서고 있음

- 선진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겨가면서 근로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징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다는 점에 있음

4. 연금 가입 목적에 따른 시장 구분

○ 한편, 사적연금시장을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근로 활동기 노후자산 적립이 목적인 경우와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이 목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세제적격 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를 노후자산으로 적립함으로써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 적립 목적이 강하며,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경우 종신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수령 기간인 10년의 단기 수령을 선호함
-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제적격 연금에 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대부분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10년의 단기 수령에 그침
-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우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나, 노후자산 적립 목적은 세제유인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세제적격 연금이 선호될 수 있으며, 펀드나 부동산 등 연금시장 이외에도 대안이 존재함으로 노후자산 적립에 약점이 있을 수 있음
- 세부 사적연금시장이 상이한 연금 가입 목적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적연금시장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표 Ⅱ-2〉 연금 가입 목적별 연금시장 구분

연금시장 구분	연금 가입 목적	
	노후자산 적립	종신연금 수령
세제적격	✓	△
세제비적격	✓	✓
퇴직연금	✓	